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 ACA, CNA-RB, CND, CND-RA, CNE, FFA, KLA-RA
 책임 기관: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Chief of District Operations

학교 시설 명명 Naming School Facilities

I. 목적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FFA, *학교 시설 명명(Naming School Facilities)*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II. 배경

- A. 학교 시설 명명은 공공 자원에 대한 헌신이며, 정책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이상, 핵심 가치, 약속을 위해 유보되어야 하는 고귀한 명예이며, 또한 Montgomery 카운티의 다양성을 공정하게 대표합니다.
- B. 교육위원회 소유의 학교와 운영 시설 공식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책임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정책 FFA, *학교 시설 명명*에 따라 허용되는 이름에 대한 기준과 학교 이름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위원회 절차를 명시합니다.
- C. 학교 또는 시설 일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Board Policy FFA, *학교 시설 명명(Naming School Facilities)*, 정책 ABA,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그리고 정책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의견 및 조언을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행해져야 하는, 학교 교육감/대리인의 책임입니다.

III. 행정 절차

- A. 신설 또는 재개설한 학교 이름 지정

1. 정책 ABA, 지역사회 참여에 규정된 지역사회 참여 절차를 통해 새 학교가 해당 커뮤니티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후견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2. 참여 활동의 목표는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 우선순위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가 그 중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a) 교육위원회는 학교 커뮤니티에 최대 4 개의 이름 후보 명단을 제공합니다.
 - b) 학교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참여 절차를 통해 최대 두 개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c) 학교 커뮤니티는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적어도 4 개 이상의 우선순위 명단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새 학교의 학교장이 임명되는 대로, 그리고 가급적 늦어도 새 학교 개교 예정일 6 개월 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a)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SSWB) 책임자는 –
 - (1) 교육위원회 최고 책임자에게 교명 선정을 위한 커뮤니티 참여 시작을 통지하고,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교명 후보 목록에서 최대 4 개의 이름을 선정하도록 요청합니다;
 - (2) 교장 및 OSSWB 지역 책임자와 논의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OSSWB 관리자를 확인하고 지명합니다(학교장이 의장 겸임 가능);
 - b) 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OSI) 최고 책임자는 선임 커뮤니티 고문과 조율하여 Equity Initiatives Unit(EIU)의 커뮤니티 참여 지원 담당자 또는 EIU 에서 교육을 받은 기타 개인을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 c)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교명 후보 목록에서 최대

4 개를 제공하며, 각 이름에 대한 간략한 근거와 함께 추천 이유를 제공합니다.

4. OSSWB/OSI 지정 의장은 다음을 책임집니다 –

- a)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가 해당하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소집;
- b) 학교 커뮤니티에 진행 일정, 목적, 참여 유형 안내;
- c) 커뮤니티 참여 절차 종료 후 교육위원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요약본 준비 –
 - (1) 학교 커뮤니티의 권장 사항과 우선 순위;
 - (2) 학교 커뮤니티가 선정한 이름이 정책 FFA 의 허용 가능한 이름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의 교육적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분석; 그리고
 - (3) 실시한 대중 참여 활동의 요약 및 참여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 d) 학교 커뮤니티에 요약 내용 통지 후속 교육위원회 심의 관련 소식의 전달.

5. 커뮤니티 참여 요약의 심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절차는 정책 FFA 를 준수합니다.

B. 학교 이름 변경

- 1.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교 커뮤니티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제출한 기존 학교/시설의 명칭 변경 청원서를 검토합니다.
 - a) 교육위원회는 청원서 접수만으로 학교의 명칭 변경 여부를 투표에 부치지 않습니다.
 - b) 교육위원회는 청원의 학교 커뮤니티의 지지 입증과 정책 FFA 명시 기준 충족의 정도에 따라 청원의 강도를 평가합니다.

- c) 학교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을 따온 경우, 교육위원회는 해당 개인의 공적 및 사적 생활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자가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추가 심의를 위해 커뮤니티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커뮤니티 참여의 목적은 새로운 이름을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a) **School Support and Well-being(OSSWB)** 최고 책임자는 학교장 및 **OSSWB** 지역 책임자와 논의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을 **OSSWB** 관리자를 확인하고 지정합니다. 학교장이 의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b) **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OSI)** 최고 책임자는 선임 커뮤니티 고문과 조율하여 **Equity Initiatives Unit(EIU)**의 커뮤니티 참여 지원 담당자 또는 **EIU** 에서 교육을 받은 기타 개인을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4. **OSSWB** 와 **OSI** 의장은 다음을 책임집니다 -
 - a)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가 해당하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소집;
 - b) 학교 커뮤니티의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 및 졸업생에게 교육위원회가 학교 이름 변경 청원을 접수했음을 알리고 향후 진행될 커뮤니티 참여 활동의 일정, 목적 및 유형 안내;
 5. 학교 커뮤니티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 및 졸업생은 정책 **ABA, 커뮤니티 참여**, 에 명시된 커뮤니티 참여 절차에 따라 상의하여 다음을 결정합니다 -
 - a) 해당 이름이 현재 학교 커뮤니티에서 갖는 의미;

- b) 개인의 이름을 붙인 학교의 경우, 해당 개인의 삶이 학교의 교육 목표, 학교 공동체의 가치, 교육위원회의 핵심가치, 및/또는 정책 **ACA** 를 뒷받침하는 정도; 그리고
 - c) 청원에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6. 커뮤니티 참여 절차가 끝나면, 의장들은 교육위원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요약본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
- a) 현재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학교 커뮤니티 반응 분석 및 커뮤니티 참여 과정에서 드러났을 수 있는, 청원서에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b) 개인의 이름을 붙인 학교의 경우, 해당 개인의 삶이 학교의 교육 목표, 학교 공동체의 가치, 교육위원회의 핵심 가치, 및/또는 정책 **ACA** 를 뒷받침하는 정도;
 - c) 유사한 학교 시스템에서 이름을 변경했을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석,
 - d) 실시한 커뮤니티 참여 활동의 요약 및 참여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 e) 학교 커뮤니티에 요약 내용 통지 및 후속 교육위원회 심의 관련 소식 전달.
7. 커뮤니티 참여 요약의 심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절차는 정책 **FFA** 를 준수합니다.

C. 학교 시설 일부분

1. 교육감의 대리인인 **OSSWB** 최고 책임자는 해당 학교 커뮤니티의 재학생, 교직원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학교 시설의 일부에 이름을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원인(들)은 학교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의 명명 요청 부분과 요청된 명칭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목적

- (1) 학교 시설의 일부에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시설 변경이 필요한 모든 대상은 정책 **CNE, *Montgomery County*** 수입으로 지원되지 않는 시설 개선 (*Facility Improvements that are not Funded with Montgomery County Revenues*)을 포함한 해당 교육구 정책과 **MCP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청원에는 충분한 비용 분석이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한 자금 또는 규정 **CNA-RA, 모금(Fundraising)** 및 규정 **CNA-RB, 광고(Advertising)**를 준수하는 모금 제안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이름, 명칭

규정 **CNA-RB, 광고(Advertising)**는 구조적 요소에 대한 기념 메시지를 허용하며, 정책 **FFA**의 학교 명명 기준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 시설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 (1) 학교 시설의 일부가 개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 경우, 학교, 커뮤니티, 카운티, 주 또는 국가에 크게 기여한 고인의 이름을 학교 시설의 일부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MCPS**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현직에 있지 않으며, 현재 공직을 맡고 있거나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학교 시설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2) 사망한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일부를 명명하자는 제안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심리 서비스 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하며,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제안을 반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장은 청원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a) 학교장/대리인은 청원을 검토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원인 청원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b) 완성된 청원서가 접수되면 학교장/대리인은 청원인 및 **OSSWB** 최고 책임자 혹은 대리인에게 이를 통보할 것입니다.
4. 정책 **ABA** 에 명시된 대로, 학교장은 학교장/대인의 커뮤니티 참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EIU** 에서 교육을 받은, 훈련된 커뮤니티 참여 지원 담당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장/대리인은 다음을 책임집니다 –
- a) 학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 소집;
 - b) 커뮤니티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후견인에게 학교의 일부를 명명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다음을 포함하여, 진행될 커뮤니티 참여 활동의 일정, 목적 및 유형 안내 –
 - (1)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후견인이 운영위원회에 공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달력 기준 적어도 **21** 일 이상) 제공, 그리고
 - (2)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청원서 및 공개 의견을 검토 및 분석하고 교육감/대리인에게 권고사항 제안; 그리고
 - c) 커뮤니티와, 교육감의 대인인 **OSSWB** 최고 책임자를 위해 커뮤니티 피드백 분석과 운영위원회 추천을 포함하는 요약본 준비.
6. 운영위원회는 청원인과 협의하여 **OSSWB** 의 의장에게 제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하거나, 수정안을 첨부하여 승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장과 **EIU** 훈련을 받은 지원 담당자는 투표권이 없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입니다.
 - b) 학교장은 청원인과 해당 **OSSWB** 지역 책임자에게 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지합니다.

7. 해당 OSSWB 지역 책임자는 접수된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OSSWB 책임자에게 권고 사항을 거부하거나 동의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OSSWB 최고 책임자/대리인은 학교장과 청원인에게 결정사항과 MCPS 규정 KLA-RA, *일반의 문의와 불만에 대한 응답(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에 따라 결정 사항에 대한 청원인의 항소권을 통지합니다.

D. 마스크트

정책 ACA, *비차별, 형평성 및 문화적 숙련도(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마스크트, 로고, 팀명, 구호 및 음악 반주가 포용적이고 차별적이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분위기를 제공할 것을 장려합니다. 교육감의 대리인으로서 OSSWB의 최고 책임자는 –

1. 학교 차원에서의 자문과 학교 커뮤니티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학교의 마스크트를 승인합니다.
2. 위의 IV.C.4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커뮤니티 의견 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규정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230-5, 1982년 10월 개정, 1997년 11월 26일 개정, 2000년 6월 29일 개정; 2005년 4월 25일 개정; 2006년 11월 17일 개정; 2006년 11월 28일 개정; 2010년 10월 14일 개정; 2014년 8월 7일 개정; 2018년 1월 3일 개정; 2022년 10월 31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l@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l@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